

**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b>제4조(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)</b> ① 자금조정대출,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. 다만, 제4호, 제5호 및 제9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 align="center"><u>&lt;신설&gt;</u> <u>&lt;신설&gt;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&lt;신설&gt;</u>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4조(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)</b> ① 자금조정대출,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. 다만, 제4호, 제5호 및 제9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</p> <p>1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(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8호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)</p> <p>12. 「상법」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</p> <p>②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, 제11호, 제12호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AA-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권(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저등급이 AA-등급 이상의 증권)으로 한정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지방채, 공공기관채, 회사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추가</p> <p>-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제한</p> <p>- 항 번호 내림</p>
<p><b>제8조(대출기간의 연장)</b>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<b>제8조(대출기간의 연장)</b>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- 자금조정대출 만기를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2022. 10. 27.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&lt;개정 2023. 1. 13.&gt;, &lt;개정 2023. 4. 11.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2022. 10. 27.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제2조(유효기간) &lt;삭제&gt;</p>	<p>- 일부 적격담보의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상시화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2023. 7. 27.&gt;</p> <p>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자 명시</p>